



국민권익위원회

국민권익위원회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「공직자 행동강령」 운영 협조요청

1. 평소 청렴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(대통령령 제31410호, '21.1.19.)으로 농수산 선물 가액 범위가 한시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「공직자 행동강령」 관련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, 이를 참조하여 각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귀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도 통보하여 행동강령이 붙임 운영방안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.

붙임: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「공직자 행동강령」 한시적 운영 방안 1부. 끝.

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



수신자 공직유관단체

조사관 김중호 행동강령과장 전결 2021. 1. 19. 박형준

협조자

시행 행동강령과-247 (2021. 1. 19.) 접수

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(어진동) / <http://www.acrc.go.kr>

전화번호 044-200-7678 팩스번호 044-200-7942 / kjh052589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. 내 삶이 달라집니다.